

경계선지능 청년 일경험처 발굴 및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한국자활기업협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하 ‘협약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무훈련 및 일경험 지원 연구사업의 원활한 실행과 일경험처 발굴 및 연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협약의 당사자로서 상호 협력하고 교류함으로써, 자활기업을 통한 일경험처 발굴 및 연계와 경계선지능인 대상 정책 및 사업 방향 제시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역량 강화 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내용) 협약기관은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1. 자활기업 기반 일경험처 발굴과 경계선지능 청년 연계
2. 직무훈련과 일경험 지원을 통한 경계선 지능인 관련 정책 및 사업 방향 제시
3.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무·예산 지원 및 자문 등

제3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기관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4조(협약변경)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관 간 합의에 의한다.

제5조(신의성실)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제2조에 따른 자활기업 일경험처 발굴과 경계선지능 청년 연계를 위해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제6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 협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시 1년씩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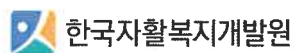
제7조(경비부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비는 상호협의를하여 처리한다.

제8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모든 정보나 자료에 대하여 상호 간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변경 및 해지) 협약기관은 상호 협의로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서명 및 보관) 본 협약서는 협약기관의 대표가 3부를 작성·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6월 28일



원 장
정 해 식

정해식



협회장
서 용 식

서용식



원 장
조 윤 경

조윤경